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 근거 신설 등〉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05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1.
3. 회부연월일 : 2025.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 및 선행 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와 기업 등에 산업재산 정보를 기초로 조사·분석·평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임.

그런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25조의2 신설), 이에 따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한 업무위탁의 근거(안 제26조), 비밀유지 의무(안 제2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31조)를 규정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2(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재산 심사행정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심사 지원 2. 산업재산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3. 산업재산 분류 및 분류 관련 국내·외 협력 4.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산업재산 심사행정 및 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

-----전략원, 진
흥원 또는-----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비밀유지 의무) -----

-----.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진흥원</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u>한국특허기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산업재산 분류 및 선행기술 조사 등 심사지원 업무와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안정적·지속적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안은 진흥원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임.

진흥원의 기관 연혁을 살펴보면(참고자료 1), 1995년 특허기술정보 센터를 시작으로, 2011년 한국특허정보원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를 거쳐 2022년 독립법인인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출범하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상태임.

2025년 11월 현재 지식재산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은 6개가 있는데, 다른 기관과 달리 진흥원은 명시적인 법적 설립근거 없이 「민법」상¹⁾ 재단법인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음.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 현황

구분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유형	기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설립근거	발명진흥법 제52조	산업재산정보법 제24조	발명진흥법 제51조	산업재산정보법 제25조	발명진흥법 제55조의2	<u>민법 제32조</u>
설립연도	1994년	2002년	2005년	2012년	2015년	2022년
주소	서울 강남구	대전 서구	서울 강남구	대전 중구	서울 강남구	대전 서구
주요기능	발명진흥, 특허사업화, 지식재산교육	특허정보 보급 및 특허넷 운영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책연구	특허로 R&D 전략지원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및 분석
정원(명)	195	423	70	250	122	652
'25 예산 (백만원)	1,215	416	97	1,476	383	627

자료: 지식재산처, 「2025년도 국정감사 인사말씀 및 업무현황」 <붙임 2>

특히 진흥원은 국가핵심기술 등의 특허관리체계 구축 및 기술안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범부처(지식재산처, 산업부, 정보기관 등)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지원하고 있는데(참고자료 1),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정성, 보안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기관 설립 및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주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개정안에서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수정해야 할 것임.

지식재산처는 진흥원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대한변리사협회는 ① 진흥원의 업무 중 일부는 특허에 관한 감정에 해당되어 「변리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점²⁾, ② 개정안은 지식재산처의 심사인력 확충 및 직접 심사 확대의 방향에 역행하여 심사행정의 외주화를 법제화하는 점³⁾, ③ 국가안보와 관련한 산업재산 정보를 민간 직원이 담당하게 하는 것은 정보의 관리 허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58

2)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7조의3(변리사 업무의 소개·알선 등 제한) ③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지식재산처 선행조사의 76%(약 200만건)을 수행하고, 30만건 이상의 특허분류를 수행하고 있음.

□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
- (설립목적) 지식재산 심사행정을 종합지원*하고, 지식재산 활용·확산을 선도하여 국가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심사관 부담 경감과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특허·상표·디자인 선행조사 및 분류 영역 수행

□ 주요연혁

- '95. 7. 7.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의거 특허기술정보센터 설립
- '02. 1. 2. 민법 제32조에 의거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으로 독립
- '07. 4. 11. 기타공공기관 지정
- '11. 7. 15.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 설립
- '14. 7. 28. 특허정보진흥센터 본사 이전(대전광역시)
- '22. 8. 4. 독립법인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출범
- '23. 1. 30. 기타공공기관 재지정(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

□ 주요업무

수행분야	수행 업무
지식재산 심사행정 총괄 지원	• 분류 부여 및 국내/국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선행조사 • 특허심사정책 수립 지원(산업혁신지원 사업 등)
법정부 기술안보체계 구축 지원	• 특허빅데이터 활용 기술안보 관리 체계 구축 지원 • 국가핵심기술 등 경제안보 관련 특허 모니터링·분석
Local&Global 협력 지원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IP행정 분야 (선행기술조사 등) 지원 • 해외(UAE 등) 특허심사 협력 지원

4) 자료: 지식재산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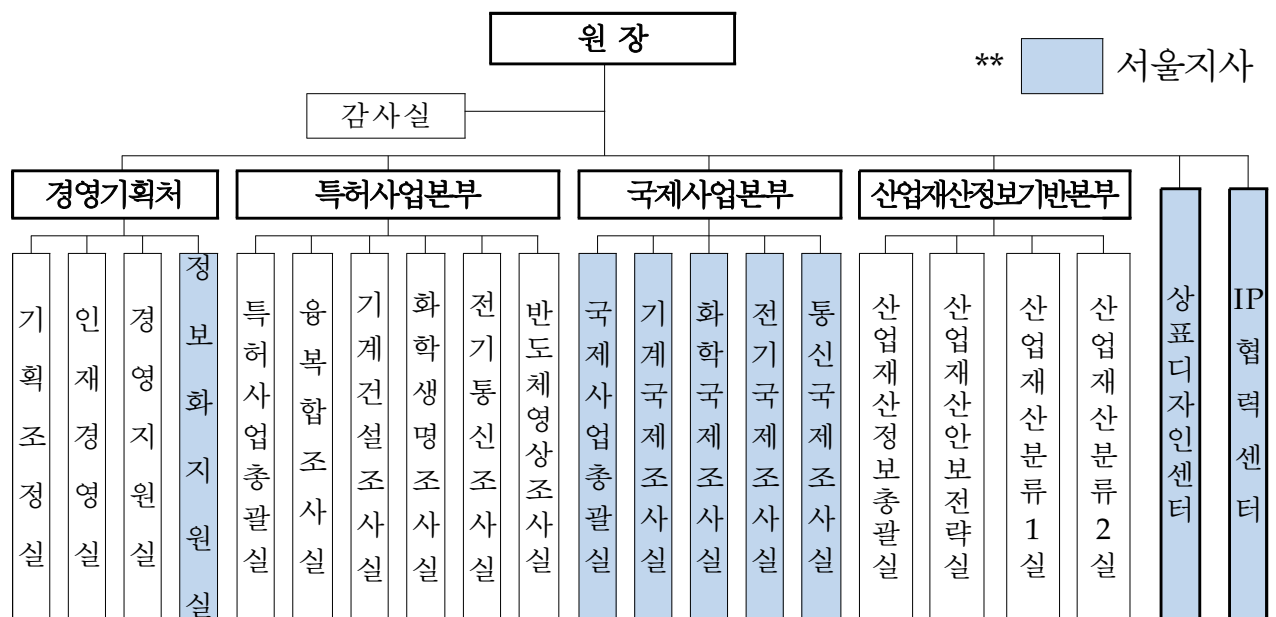
□ '25년 예산 : 62,71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24년(A)		'25년(B)		증감(B-A)	
								%
특허청 사업	44,839	(78.1%)	46,729	(76.5%)	47,497	(75.7%)	768	1.6
자 체 사 업	10,037	(17.5%)	11,503	(18.8%)	11,527	(18.4%)	24	0.2
사업외수입	2,308	(4.0%)	2,675	(4.4%)	3,694	(5.9%)	1,019	38.1
전년도이월금	193	(0.3%)	206	(0.3%)	0	-	△206	순감
계	57,377	(100.0%)	61,113	(100.0%)	62,718	(100.0%)	1,605	2.6

□ 조직 및 인력

- 조직: 3본부 1처 2센터 20실



* 자회사 : IP Korea Center (파견1명, 현지2명,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 수행업무 : PCT 송달서류 발송업무 대행, PCT Help-desk 운영 등

□ 기관 특징점

- (전문성) 국내 최대의 쏘 기술분야 특허분석 전문가 보유
 - 10개 전문기관 중 유일하게 38개 쏘 분야 조사수행 국제출원 조사 만족도 3년 연속 1위

- 직원 643명 중 87% 자격증 보유, 34% 석·박사급 전문가, 평균 15년 경력 보유
- **(노하우) 약 30년간 축적된 IP분야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
 - 특허청 선행조사의 76%(200만 건) 수행, 연간 30만 건 이상 특허분류 수행
 - 180여 개 기관·기업과 협력, 맞춤형 특허분석 서비스 제공
- **(글로벌 경쟁력) 국내 유일의 글로벌 수준 특허심사 행정지원 서비스 수출**
 - UAE 특허심사 전량 수행(수출액 ⁽¹⁴⁾42만 달러→⁽²⁵⁾294만 달러), 품질평가 99.53% 달성
 - 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IP 신흥국과 협력 확대 예정
- **(기술보호·연계) 국가 핵심기술 보호 등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역할 수행**
 - 국가핵심기술 등의 특허관리체계 구축 및 기술안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범부처(산업부, 특허청, 정보기관 등)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 지원
 - 범 부처 협력을 위한 특허분류(CPC·KPC)와 주요 과학·산업·기술 분류 연계
 - 녹색기술 특허분류 설계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부 및 산하공공기관과 협력
- **(전략자산) IP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기반의 독자적인 전산자원 보유**
 - 평균 15년 경력 엔지니어 6명 보유, 정부 조달·신기술 인증서비스 10년 이상 수행
 - 자체 특허검색시스템 KIWEE(12~), K-PEG 평가시스템(07~) 운영, AI 장비 도입

참고 2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비교

구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법안 추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목적	국가핵심·방산 등 민감 기술 유출방지 및 기술주권 보호	R&D 단계 국가전략기술 발굴 및 육성 지원
분석대상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등 국가안보 관련 미공개 특허	공개된 특허·논문 등 공개 특허기술데이터 중심
업무단계	특허출원단계 기술정보 조사·분석	R&D 기획·개발단계 기술분석 및 전략수립
기술 범위	국가안보 분야 특허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첨단산업기 술 등 특허)	전 산업분야 기술 전반
데이터 범위	특허출원단계 미공개건 열람 가능 (處 내부망·보안인가 기반)	공개데이터만 접근
조사분석 방식	국가안보 분야 개별 특허 기반 특허분류→DB구축→모니터링→결과 분석	국가전략기술 발굴·육성을 위한 거시적 기술분석
보안수준	(폐쇄망·보안인가·비밀취급자) 기반 수행	일반 정보처리 수준
사업수행	2022. 1. ~	2024. 1. ~

자료: 지식재산처